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수신자 신제품인증업체 대표  
(경유)

제목 신제품인증 심사관련 변경사항 안내

---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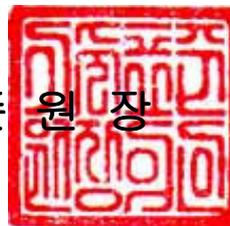
2. 우리원에서는 인증심사기간 단축에 의한 인증신청기업 지원과 신제품 인증·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금년부터 외부기관을 활용한 신제품 인증·평가 업무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2010년 유효기간 연장 신청제품에 대한 인증평가의 일부를 불임과 같이 '(사)한국신제품(NEP)인증협회'에서 수행하도록 할 예정임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4. 기타, 신제품 인증관련 궁금한 사항은 기술표준원(신기술인증지원과(전화 : 02-509-7288))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신제품(NEP)인증업무 절차도 1부. 끝.

기술표준원장



공업연구관

안광희

신기술인증지원 01/27  
과장 정의식

협조자

시행 신기술인증지원과-212 (2010. 01. 27.) 접수

우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 기술표준원 신기술인 / http://www.mke.go.kr  
증지원과

전화 02-509-7287

전송 02-509-7316

/ khan@kats.go.kr

/ 대국민공개